

[농식품부] 축산분뇨처리(정화시설 개보수) 시설 지원사업 주요내용 안내

※ 본 사업은 '19년 방류수 수질기준(표1참조)에 적합한 시설 운영을 위한 한시적 지원 사업임(~16년) ·신고·허가 대상별 '19년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 보완

1. 사업대상자 및 자격요건

- 가축분뇨법 제11조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축산농가,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주체(소·돼지·닭), 농업법인, 지역농·축협 중 현재 가축분뇨 정화방류 처리시설을 운영중인 자
 - * '13.1.1일 이전 정화처리 방법으로 배출시설 신고(허가)한 재신고필증 확인)

2. 지원자금의 용도

- 신고·허가 대상별 '19년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개보수에 필요한 시설·기계 등 구입·설치비
- 의무 설치 : 방류유량계(전자식), 전력량계
- 선택 설치 : 전처리시설, 생물학적 처리시설, 후처리, 방류(고도처리), 축사·축분처리시설, 악취저감용 미생물 배양·공급 시설, 악취저감(액비순환) 시설

3.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 지방비 20%, 용자 60%

* 용자 조건 : 연 2%,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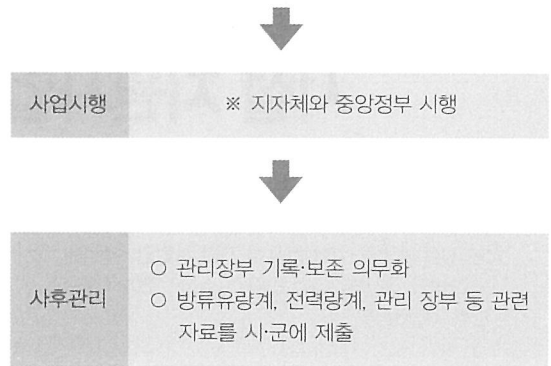
- 사업비 선정 : 개소당 사업비는 축종별 축사 m²단위 면적당 사업비에 의거 산출·적용. 단, 무허가 축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나, 사업완료 후 허가 축사로 등록하겠다는 조건부로 지원 가능
 - * 축사내 일부 무허가 축사(시설)가 있어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 축종별 축사 m²단위 면적당 사업비(단위:천원/m²)

축종	젖소	육우
단가	70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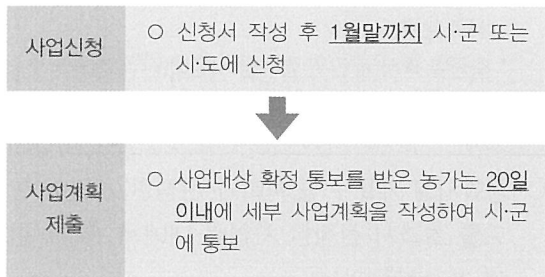
- 정화시설 개보수 공사비가 산정한 사업비 한도를 초과시 산정한 사업비 내에서 1회에 한해 추가지원 가능
 - * 추가 지원 자금은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에 포함하고 한도액 초과시 추후 지원배제



- 산정한 사업비 단가보다 실제 공사단가가 낮을 경우 시공단가 적용
- 고액분리기, 정화방류탈색장치 : 30백만원 이내에서 지원
 - * 기계·장비 가격은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등에서 제조업체별 제공한 가격 및 제품사양 정보를 기준으로 지원
- 약취저감용 미생물 배양·공급시설은 10백만원 이내 지원



5. 사업 진행 절차



※ 「축사시설현대화사업」관련 내용

- 분뇨처리시설 : 축사를 신축·철거 후 개축하는 농가로서 축사와 분뇨처리시설을 통합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 분뇨처리시설 설치만을 이유로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과 지원범위 중복 방지)
- * 스키드로더/수거운반살포장비 등 이동형 장비도 지원불가(「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과 지원범위 중복 방지)

참고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구분	항목	특정지역					기타지역				
		현행	신규 시설	기존시설			현행	신규 시설	기존시설		
				2015년 12.31까지	2016년 1. 1부터	2019년 1. 1부터			2015년 12.31까지	2016년 1. 1부터	2019년 1. 1부터
허가 대상 배출 시설	BOD(mg/l)	50	40	50	40	40	150	120	150	120	120
	SS(mg/l)	50	40	50	40	40	150	120	150	120	120
	T-N(mg/l)	260	120	260	120	120	850	250	850	500	250
	T-P(mg/l)	50	40	50	40	40	200	100	200	100	100
신고 대상 배출 시설	BOD(mg/l)	150	120	150	120	120	350	150	350	150	150
	SS(mg/l)	150	120	150	120	120	350	150	350	150	150
	T-N(mg/l)	850	250	850	500	250	-	400	-	600	400
	T-P(mg/l)	200	100	200	100	100	-	100	-	100	100

* 자료 :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3.24 개정, 2015.3.25 시행)」

* 특정지역 : 상수도보호구역,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자연공원, 지하수보전구역, 수질 및 수생태계의 환경기준을 등급 1로 보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요약 및 정리 : 본회 기획조정실 사원 허재평